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6월 22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7. 8) 상정
- 제17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7. 8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세정과장 심 명 식)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이 2011. 1. 1.부터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나누어져 시행됨에 따라 조례 중 해당되는 조문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관련조문 변경(안 제3조, 제10조)

- ① 「지방세법」 → 「지방세기본법」
- ② 「지방세법시행령」 →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○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「지방세법」 제56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2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7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